



기 획 재 정 부

함께
대한민국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20년 4 /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

『법인세법 시행령』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귀 부(처?청?시?도)가 추천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지정(재지정)하오니 해당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2020.12.31일자 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동 지정결과가 고시될 예정입니다.
"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→ 법령 → 고시"

- 붙임 1.2020년 4/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 1부.
 - 2.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방법(사단,재단,사회적협동조합,공공기관) 1부.
- 끝.

기획재정부장관



수신자 강원도 등 266곳

주무관	노예순	사무관	박재광	법인세제과장	전결 2020. 12. 30. 이재면
협조자					
시행	법인세제과-1811	(2020. 12. 30.)	접수	에너지산업과-30667	(2020. 12. 30.)
우	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, 기획재정부 (어진동)			/ http://www.moef.go.kr	
전화번호	044-215-4228	팩스번호	044-215-8073	/ nys913@korea.kr	/ 대국민 공개